

# 06

##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 ① 2025 HSK 주요개정 사항
- ②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에 관한 품목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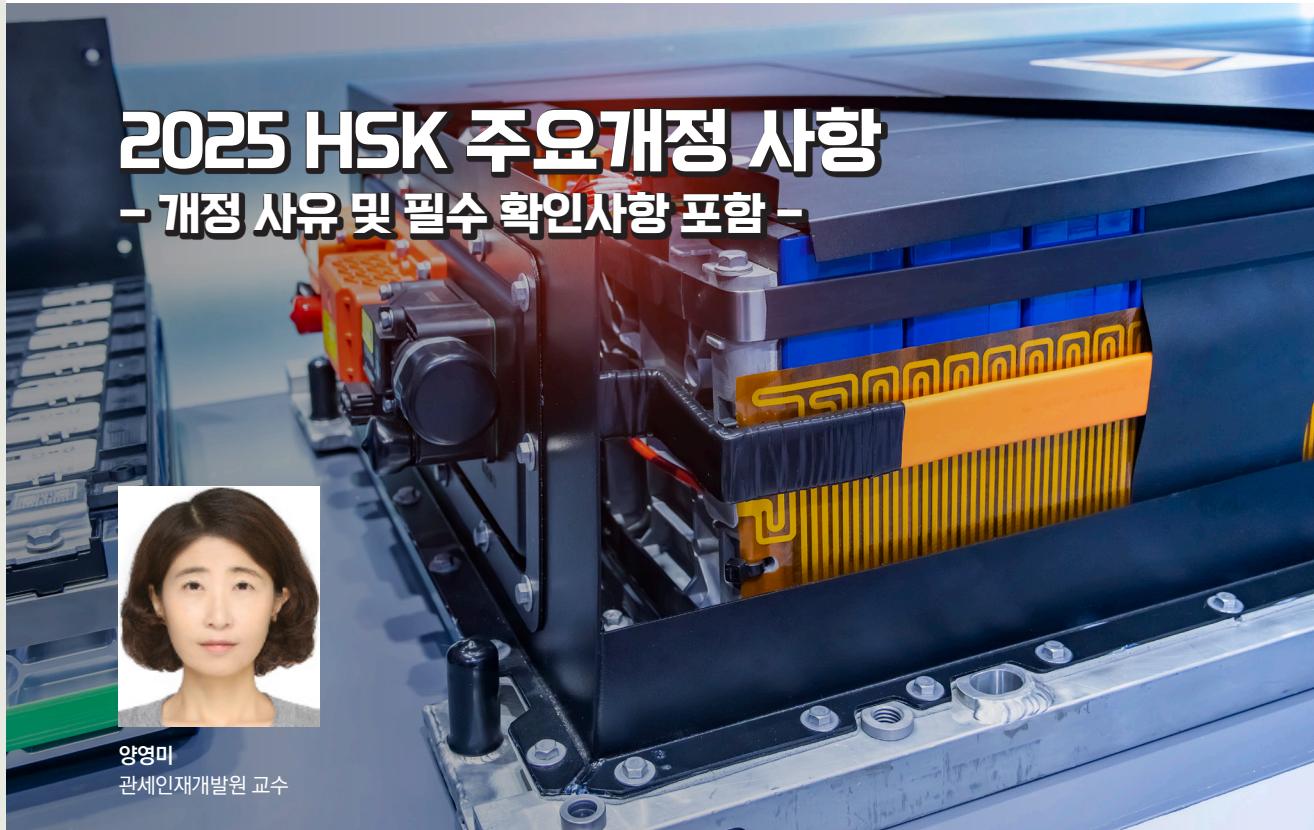


# 2025 HSK 주요개정 사항

## - 개정 사유 및 필수 확인사항 포함 -



양영미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 들어가며

1990년대 WTO 출범 등 자유무역주의 확대로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관세는 단순한 Tax의 성격을 넘어 외교 정책수단 또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한다.

품목분류(HS)는 WTO 자유무역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제간에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통일된 분류 기준을 사용하도록 협약국에 의무를 부여한 WCO HS협약에 담긴 품목분류표의 해석을 말한다.

HS협약 제3조에서 체약당사국은 통일된 분류체계 코드를 수정없이 사용하도록 하되, 무역통계 등을 위해 협약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6단위 이하를 세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HSK(Harmonized System Korea)라 하며, 관세법시행령 제98조에 수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보통 HS 협약 개정시 HSK도 함께 개정되기 때문에 HSK 개정 주기를 5년으로 알고 있지만 개정주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시에 한다. HS 협약 역시 5년으로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S 품목분류표는 2022년 제7차 HS 협약 개정본으로, 정상적이라면 5년 후인 2027.1.1.일에 제8차 개정이 시행되어어야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연장된 2028.1.1. 시행된다.

개정 이유를 보면 HSK도 WCO 개정과 마찬가지로 신상품의 등장, 무역통계 산출, 환경이나 공공 보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된다. 2025.1.1. 시행된 HSK 역시 그러한 이유가 대부분이다.

지금부터 2025.1.1.자로 개정된 주요 품목과 그 개정 취지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

## 1. 新성장 산업과 공급망 관리, 정책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수소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스택, 신생 에너지인 연료 전지시스템과 수전해 설비, 서비스 로봇 등이 있다.

### ① 연료전지스택(Fuel cell stack) : HSK 8501.33-2010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6단위 이하는 출력(W)에 따라 세분류된다. 연료전지(fuel cell)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주는 에너지 변환장치이다.

순수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에는 연료전지스택이 장착되어 있는데 구동 원리를 보면 전기나 오일 대신 수소를 충전시키면 연료전지스택에서 충전된 수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모터로 보내면 모터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바퀴를 구동하게 된다.

즉 연료전지스택(fuel cell stack)은 화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제8501호의 발전기 범주에 분류하되, 우선 수소 차에 많이 사용되는 75Kw~375Kw 출력의 소호에 연료전지스택을 신설하였다.





## ② 연료전지 시스템(Fuel cell system) : HSK 8501.62-1000

그럼 연료전지 시스템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스택과 기능상으로 동일하다.

다만 스택이 외부에서 수소를 공급받는다면 시스템은 수소를 만들어 내는 장치나 전력변환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전력변환 장치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교류발전기 이하에 HSK를 신설하였다.

주의해야 점은, 여러 기능이 결합된 시스템 형태를 제8501호에 신설했다는 것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복합기계) 또는 제4호(기능단위기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기능 또는 그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제8501호에 분류할 수 있을 때 검토가 가능하다.

## ③ 수전해 설비(Water electrolysis plant) : HSK 8543.30-2000

수전해 설비는 전해조(electrolyzer), 전해질(electrolyte), 전극(electrode), 전기공급장치(power supply)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형태의 설비로, 앞에서 살펴본 연료전지 스택과는 반대의 기능을 한다. 즉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물(H<sub>2</sub>O)을 수소(H<sub>2</sub>)와 산소(O<sub>2</sub>)로 분해한다.

제8543호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8543.30호는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용 기기(Machines and apparatus for electroplating, electrolysis or electrophoresis)” 분류되기에 기능에 따라 해당 소호 이하에 HSK를 신설하였다.



〈예시 : 독일 지멘스사의 수전해설비〉

앞에서 살펴본 연료전지 시스템과 같이, 제16부 주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함께 제시된 구성요소를 HSK 8543.30-2000 분류할 수 있다.

#### ④ 서비스 로봇 (Service robot) : HSK 8428.90-2000(서빙용), -3000(배달용)

로봇은 인간의 반복된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기계로, 보통 산업용 로봇과 구분하고자 서비스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한다. 다만 아직까지 품목분류표상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정의나 규정 등은 전혀 없다.

이번에 HSK에 반영된 로봇은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과 라이더 대신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2가지 형태의 로봇으로, 23년도에 신기술 물품에 대응하고자 우리나라가 선도하여 WCO HS 위원회에 상정, 최종 제73차 HS 위원회에서 제8428.90호로 확정되었다.

당시 제8428.90호(이송용 기타 기계) 제8479.89호(그 밖의 기계) 제8704.60호(화물차량), 제8709.11호(자주식 작업자) 4개 경합세번을 검토하여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2개 로봇 모두 제8428.90호로 분류되었다.

컨베이어, 리프트가 분류되는 제8428호에 서빙 로봇이 분류되는게 맞나? 언뜻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WCO HS위원회에서 폭발물을 탐지·제거 작업로봇을 제8428호로 결정하면서, 2022년 HS 협약개정시 제8428.70호에 산업용 로봇을 신설 되었다. 다만 상정된 2개 로봇은 분명 산업용은 아니므로 제8428.70호가 아닌 기타 호로 분류되었다.

WCO 논의 당시 제8709호는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사용하는 작업차량이므로 우선 배제하였고, 많은 나라에서 제84류 산업군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로봇을 제8479호(해설서에 다용도 로봇 등을 예시하고 있음)에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8479호 의견도 제법 많았지만, 결론은 음식을 이송하는 기계라고 보아 제8428호에 분류하였다.

두 번째, 배달 로봇은 차량의 형태를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므로 제8704호의 화물차로 분류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견들도 많았지만, 일관성 차원에서 서빙 로봇과 동일하게 제8428호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WCO 결과를 반영하여 제8428.90호 이하에 실내 서빙로봇(HSK 8428.90-2000)과 실외 배송로봇(HSK 8428.90-3000)을 각각 HSK를 신설하였다.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서비스 로봇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며, 예를 들어 수술용 로봇이라면 그 기능에 따라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로 분류해야 한다.



〈실내 서빙로봇〉



〈실외 배송로봇〉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국내분류사례('24.9.24. 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2.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성형 목탄(제4402호)과 수도꼭지(제8481호), 수소불화탄소(제3814호), 토양살충제(제2930호), 남방먹조기 & 점성어(제0301호)가 있다.

### ① 성형목탄 : HSK 4402.90-1011

식당이나 캠핑장에서 숯불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성형 목탄의 경우, 불이 쉽게 붙게 하기 위해 독성 물질인 질산바륨 등을 착화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고자 착화제가 포함된 성형 목탄을 HSK 4402.90-1011 등 3개 호에 신설하였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부처(산림청)에 어떤 요건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구이용 성형숯

〈출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② 수도꼭지 : HSK 8481.80-2010

수도꼭지의 경우 속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으로, 수도꼭지(수전) 내부에 남아 있는 납이나 페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식수를 통해 용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관단계에서 관리하고자 HSK 8481.80-2010에 수도꼭지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기관(환경부)을 통해 납 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인증 절차 등을 밟아야 할 것이다.

## ③ 수소불화탄소(HFCS)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HSK 3814.00-1030,

HSK 3814.00-2910, HSK 3907.29-1010, HSK 3907.29-2010

오존층 보호 등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포함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관리하고자, 거래량이 많은 제3814호와 제3907호에 해당 물품이 함유된 것은 HSK 별도로 신설하였다.

## ④ 포레이트 : HSK 2930.90-2010

토양 살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포레이트(ISO)는 무액 무취의 휘발성 유기용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농약 원료이다.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하여 감자나 마늘, 생강, 무와 같은 뿌리 채소의 살충제로 사용한다. 이 물품 역시, 수입하기 전에 관련 기관(농식품부)을 통해 미리 필요한 요건확인 서류를 갖추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⑤ 남방먹조기 & 점성어: HSK 0301.99-9096/-9097

제3류 어류에도 HSK가 신설되는데, 신설 이유는 원산지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서다. 최근 횟감으로 인기가 많은 국내산 민어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산 남방 먹조기(큰민어라고 부름)와 점성어(흉민어라고 부름)의 수입량이 많아지고 있다.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 민어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입 단계부터 원산지 이력 관리를 위해 해수부 요청으로 신설하였다.

따라서 해당 어류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관련 부처(해수부)를 통해 어종 확인 등 필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품명	특징	명칭
민어		영명 : Mi-iuy croaker
		학명 : <i>Miichthys miiuy</i>
큰민어 (남방먹조기)		영명 : Japanese meagre
		학명 : <i>Argyrosomus japonicus</i>
점성어 (홍민어)		영명 : Red drum
		학명 : <i>Sciaenops ocellatus</i>

〈출처 : 식품의약처〉

### 3. 관세청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기재부 HSK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불일치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초음파 어군탐지기, 가구제조용 목재, 전구용 필라멘트,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이 있다.

#### ① 초음파 어군탐지기 : HSK 9014.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는 수면 아래로 초음파를 발사해 선박 주변에 분포하는 고기 떼를 찾아내는 탐지 장치로, 보통 소나(SONAR)라고 부른다. SONAR는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약자로,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 해군에 의해 개발된 음향을 이용한 항법 및 거리 측정 장치이다.

제9014호에는 ‘방향 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14호 해설서 ‘그 밖의 항행용 기기’에 대한 설명 부분 (B)에 “(7) 초음파 측심기(ultrasonic sounding equipment)나 초음파 탐지기 (ultrasonic detecting equipment) : 예를 들면, 잠수함 탐지기[(英) asdic, (美) sonar]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통의 측심(測深) 작업용, 해저지도

제조용, 잠수함·난파선·물고기 떼 등의 탐지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지상과 달리 전자파나 레이더는 물속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파를 발사해 선박에 부딪혀서 반사해 오는 값을 포착, 고기 떼나 적군의 잠수함 등을 탐지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초음파 어군탐지기를 HSK 9031.80-1000 세분류하여 관리해 오고 있었다. 제9031호는 제90류의 잔여호로 초음파를 이용해 두께나 균열 등을 측정하는 기기 등이 분류되므로,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

다만 제903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9014호 해설서에 소나(SONAR)를 이용한 어군탐지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31.80호의 HSK를 삭제하고 제9014..80호에 어군탐지기를 신설하였다.

## ② 가구 제조용의 목재판 : HSK 4421-99-9010

해당 물품은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목재판을 길이 방향으로 연결해 만든 가구 제조용의 나무판으로, 2022년 제7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품목분류4과-6669)를 참조해 보면 좋을 듯 하다.

당시 제4407호, 제4418호, 제4421호 3개의 호\*가 경합되었는데, 결정은 최종 그 밖의 목제품인 제4421호로 결정되었다.

\* HSK 4407.19-5000(기타의 제재목-편백나무), HSK 4418.99-2000(목재로 만든 건축용구-집성판), HSK 4421.99-9000(그 밖의 목제품-기타)



〈출처 : 관세법령정보센터, 국내분류사례〉



언뜻 품명만 보면, 제4418.81호의 집성목과 유사해 보이지만 제4418호의 집성목은 대들보나 계단, 지붕 같은 건축 구조용 목재가 분류되는 호로,

제4418호의 해설서에 집성재는 무거운 구조용 구성재로서 목재를 각 층의 나뭇결을 연속된 층들의 나뭇결과 평행하게 방향성을 부여한 채로 함께 접합시켜 여러 층으로 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톱밥(가루) 등을 접착제와 혼합해 압착시킨 MDF 합판과 비교해 보면, 이 집성판으로 만든 가구는 나무 무늬결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통 원목의 자투리를 모아 일정하게 자른 후 이어 붙여(집성) 만든다. MDF와 구분하기 위해 원목 가구라고 부르지만 실제 건축용에 사용되는 집성목과는 견고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에서는, 나무를 잘라 이어 붙인다는 점에서 건축용 집성목과 유사하지만, 가구제조용의 목재를 제4418호의 건축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다수 위원의 판단이였다.

이러한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을 반영하고, 통관이나 무역통계 오류를 줄이고자 2022년에 신설된 HSK 4418.99-2000을 삭제, HSK 4421.99-9010에 집성판을 신설하였다. 다만 혼란방지를 위해 건축자재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 ③ 전구용 필라멘트 : HSK 8101.99-9010

이 물품 역시 관세청 유권해석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전구 안을 보면 실처럼 가는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는데, 전기가 통하면 뜨거워지면서 빛을 내게 된다.

전구(램프)는 제8539호에, 전구의 부분품은 제8539.90호에 분류된다. 다만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텅스텐 와이어는 재질인 제8108.96호에 분류된다. 그럼 제8108.96호의 선(wire)은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를 보면 제81류에서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한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1)과 같은 원재료(와이어)는, 당연히 제8108.96호에 분류될 것이고 약간의 가공이 있더라도 제15부 주 제9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호에 남을 것이다.

다만, 그림(2)와 같이 제8108.96호의 선을 이용해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전구용 필라멘트는 주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K 8101.96-9010에 구체적으로 전구용 필라멘트를 특개하고 있다보니 대다수가 해당 호로 분류하는 문제점이 생겨, 이를 개선하고자 HSK 8101.96-9010 삭제, HSK 8101.99-9010에 전구용 필라멘트를 신설하였다.



#### ④ 정형외과용 스크루 : HSK 9021.10-1000

이 물품은 정형외과에서 사람의 골절된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티타늄 재질의 나사(스크루)로, 2017.3월 제59차 WCO HS위원회에서 이미 제9021.10호로 결정되었다. 이후 2019.2월에 관세청 고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국내 수용 하였다.

당시 WCO에서는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용 나사를 제15부 주 제2호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였는데, 첨예한 논의 끝에 기계 등에 사용되는 나사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 제9021호로 결정하였다.

후속조치로 2022년 HS 협약 개정시 현재와 같이 제15부 주 제2호에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견지명이 있었던건지 이런 국제적 논쟁이 있기 전부터(~2014년) 이미 제9021.90호에 스크루·스테이플·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특게하고 있었다.

문제는 소호인데, 인체에 삽입되는 스크루라도 용도에 따라 제9021.10호와 제9021.90호를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HSK가 제9021.90호(기타)에만 특게하고 있다 보니, 정형외과용의 것도 제9021.90호에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9021.10호(정형외과용, 골절치료용) 이하에 동일 품명으로 HSK를 신설하였다.



〈WCO HS 위원회 결정 물품〉



〈응용사진〉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HSK 주요개정 사항을 물품별로 상세히 살펴 보았다. 끝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관세청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기재부 HSK 체계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수 있지? 기재부 고시인 HSK 용어가 우선하지 않을까?라고 답한다.

하지만 답은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관세청 유권해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품목분류 유권해석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HSK가 신설된 이후에 다른

세번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법 등에 둘이 다른 경우 어느 법이 우선한다는 명백한 조항은 없지만,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판단은 관세법 제86조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제87조에 그 결정을 신뢰하여 수출입을 한 납세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이런 경우 실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기재부 포함 관련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HSK 개정하거나 관세청 결정내용을 변경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지금까지 기타 호 등, 다른 호로 신고해 오다가 새로운 호(HSK)로 이동하였더니, 세율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우 역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명확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이전 품목 분류에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봄해야 한다. 왜냐하면 HSK 개정은 세분류(신설)나 통합(삭제)을 한 것이지, 세율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전과 세율이 달라지면 검토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HS(또는 HSK)가 개정될 경우, 첫째, 개정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품목분류는 함축된 용어(words)로 특정 범위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개정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계한 세번의 세율이 달라지거나,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 등재된 분류사례와 HSK 체계가 다를 경우, 수출입 신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에서 정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신청시 사유란에 그런 내용을 적어 준다면, 심사자가 보다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해 줄 것이다.

잊지말자! HS(또는 HSK) 개정으로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에 관한 품목분류



이민범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I. 들어가며

관세율표에서는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이라는 단어가 호의 용어에 다수 특례돼 있다. 다만 그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에 소매 판매에 대해서만 해설하고 있을 뿐 각 호별로 분류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공급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으로 상품시장에 수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양과 포장을 한 물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소매용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규정 등이 부족한 현행 품목분류 체계로는 수입 당시의 상품의 모양과 포장만 보고 소매용 물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소매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잘못 판단하여 품목분류 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수입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HS Code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소매용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소매판매의 의미를 분석하고 소매판매 의미에 따라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 용어의 호에 품목번호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소매 판매의 의미

### 1. 사전적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매(retail·小賣)란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sale·販賣)란 상품 따위를 파는 것을 의미한다. 소매와 판매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소매 판매란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 사들여서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율표 전체를 살펴보면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으로 한 것을 분류하는 호가 다수 있으며 영문 관세율표 호의 용어를 볼 때 소매용(for retail sale)은 소매 판매를 위한 용도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만을 볼 때 소매용의 경우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목적만을 의미한다면 소매용 포장이나 소매용 모양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목적 외에도 상품이 목적에 맞는 형태이거나 포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 정의

구분	영문	정의
소매용 (小賣用)	For retail sale	물건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용도
소매용 포장 (小賣用 包裝)	Packings for retail sale	물건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용도로 물건을 싸거나 꾸린 것
소매용 모양 (小賣用 模樣)	Forms for retail sale	물건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용도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 2. 관세율표상 소매 판매의 의미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에 대하여 분류되는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호별로 소매용 제품에 분류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규정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의 소매 판매의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용으로 분류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에서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즉 소매용 물품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물품의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조·조제·재포장·혼합 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

### 〈표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해설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를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서

(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중략)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 3. 그 밖의 규정상 소매 판매의 의미

미국 관세율표 제4부의 추가 주 규정 2(c)에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쉽게 소매 판매의 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포장되고 라벨링 되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시 제품의 포장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통해 소매 판매는 제품의 포장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판매돼야 하며 포장이나 라벨링이 최종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형태의 형상을 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담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라고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소매용 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적합한 물품의 최소단위 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소매판매의 분류기준

#### 1. 분류기준

소매 판매의 의미를 통해 소매용 물품의 HS Code에 분류되기 위한 기준으로 ①외형적 요건, ②용도적 요건, ③개별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한다는 분류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



## 2. 외형적 요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에서 소매 판매는 추가적인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시 물품의 포장이나 모양이 추가적인 재포장 등의 작업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제작된 외형의 모습이어야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매 판매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외형이 최종 사용자가 구매 후 물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외형적 요건의 경우 물품의 특성과 판매형태에 따라 제작된 모양과 포장된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데 해당 물품의 상거래 관행상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모양이나 포장을 하고 있는 경우 소매 판매 외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매용 물품의 호로 품목분류된 사례를 통해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캔, 유리병, 바이알, 지제 봉투, 종이 꽈, 비닐 봉투,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물품의 구(ball), 정제(tablet), 플레이트(pate) 등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벌크화물 등 물품의 외형이 명백히 추가적인 제조가 필요하거나 재포장 없이는 그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없는 포장이나 모양인 경우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용도적 요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에서 소매 판매는 추가적인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의 용도가 추가적인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입물품이 재포장 등의 작업 없이 물품 그대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물품의 외형이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적합한 형태인 경우에도 물품을 추가적으로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 하려고 하거나 물품 그대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 소매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수입 시 물품의 외형만으로는 물품의 정확한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에 기재된 물품의 사용 용도나 수입서류, 물품 설명서 등을 통해 물품의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물품을 제외하고 있는 호로 품목분류된 사례를 통해 물품의 포장이나 모양이 유리병, 플라스틱 튜브, 플라스틱 용기 등 소매포장의 외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혼합한 이후 재판매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견본용·연구용 물품처럼 물품 그대로 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개별적 요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서 소매용 물품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있다.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통칙 제3호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물품의 외형이나 용도가 소매 판매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각 호에 따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예를들어 소매용으로 보이는 실의 경우에도 제11부 주4호 가목에서 별도로 규정한 소매용 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매용 실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소매용으로 보이는 글루나 접착제 제품의 경우에도 제3506호의 용어 및 그 해설에서 소매용 글루나 접착제에 대해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매용 글루나 접착제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표 3〉 소매 판매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정리**

소매 판매 분류 요건	정의	설명
외형적 요건	포장이나 모양이 추가적인 재포장 등의 작업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 될 수 있도록 제작된 외형의 요건	<p>수입물품의 포장이나 모양이 상거래 관행상 재포장 등의 작업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포장이나 모양인 경우에 소매용으로 볼 수 있음.</p> <p>예시) 벌크 형태의 외형으로 들어와 수입 후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소매용으로 보지 않음.</p>
용도적 요건	물품의 용도가 추가적인 재포장 등의 작업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용도의 요건	<p>수입물품의 용도가 재포장 등의 작업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볼 수 있음.</p> <p>예시) 다른 의약품과 혼합하여 재판매될 의약품의 경우 유리병에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소매용으로 보지 않음.</p>
개별적 요건	관세율표 각 호 규정이나 해설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p>관세율표 각 호에서 소매용에 분류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설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p> <p>예시) 글루나 접착제의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되어있고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순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제3506.10호 소매용 글루나 접착제로 분류할 수 없음.</p>

## IV. 맷음말

지금까지 소매판매의 개념을 살펴보고,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 용어의 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매용 제품의 경우 관세율표나 해설서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본 글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만으로도 판단이 어려운 물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분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에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